

1. 개정이유

먹는물관리법 개정('21.1.5)으로 관련 조항 및 용어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(제2조의2제4항, 제4조, 제4조의2, 제10조, 제11조, 제16조, 제32조, 제35조, 제36조, 제36조의2, 제36조의3, 제39조, 제45조, [별표5], [별표8], [별표9], [별표10], [별지 제2호서식], [별지 제4호서식], [별지 제5호서식], [별지 제8호서식], [별지 제9호서식], [별지 제10호서식], [별지 제10호의2서식], [별지 제10호의3서식], [별지 제13호의2서식], [별지 제14호서식], [별지 제15호서식], [별지 제18호서식]) 일부개정)

1)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 및 용어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하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할 필요

나. 정밀 검사장비의 임차사용 허용(제9조 별표3 일부개정)

- 1) 먹는샘물 및 정수기 제조업의 검사장비중 고가인 정밀장비를 구비하여 운영토록 규정
- 2) 검사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 등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구비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

다. 먹는샘물 제조업 생산 및 작업일지 보존방법 개선(제20조 별표5 일부개정)

- 1)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장에서 생산 및 작업일지를 서류형태로 작성보관(3년) 하고 있어 생산·관리가 불편하고 활용에 비효율성 초래 가능
- 2) 생산 및 작업일지를 간소하게 전산형태로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

라.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경력 완화(제35조 별표8 일부개정)

- 1) 기술인력중 석사와 학사의 학위자에 대한 구분이 없어 경력조건을 적용하고 있어 석사학위자는 고도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2년이상의 학업과정을 마친 자로서 학사학위자와의 실무경력을 차등화할 필요

- 2) 대학과 동일한 분야를 전공한 석사이상의 학위자의 경우 필요경력을 2년
으로 완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

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발급하여야”를 “발급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8조의2제4항”을 “법 제8조의2제6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)”를 “(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가허가”를 “임시 허가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가허가를”을 “임시 허가를”로, “가허가 신청서”를 “임시 허가 신청서”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가허가 신청”을 “임시 허가 신청”으로, “가허가증을 발급하여야”를 “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야”로 한다.

제4조의2의 제목 “(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변경신고)”를 “(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5항까지”를 “제3항까지, 제6항 및 제7항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1조제4항”을 “법 제21조제6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1조제5항”을 “법 제21조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5항까지”를 “제3항까지,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1조제5항”을 “법 제21조제7항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법 제21조제7항”을 “법 제21조제11항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

출해야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, “법 제26조제3항”을 “법 제26조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발급하여야”를 “발급해야”로 한다.

제32조제1호가목 중 “제4항까지”를 “제3항까지 및 제6항의 규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“법 제21조제5항”을 “법 제21조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마목 중 “아니하거”를 “않거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 중 “법 제43조제7항”을 “법 제43조제9항”으로, “갖추어야”를 “갖춰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,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를 확인해야 하며,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
제35조제10항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1항 중 “법 제43조제2항”을 “법 제43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법 제43조제8항”을 “법 제43조제10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법 제43조제5항”을 “법 제43조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제36조의2 중 “법 제43조제10항”을 “법 제43조제12항”으로 한다.

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3조제11항”을 “법 제43조제13항”으로 한다.

제39조 중 “법 제43조제9항”을 “법 제43조제11항”으로 한다.

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가허가”를 “임시 허가”로 한다.

별표3의 제1호.다목2) 중 “의뢰하는”을 “의뢰하거나 사용계약 체결 등으로 언제나

사용할 수 있는”으로, “장비를”을 “해당 장비”로 한다.

별표5의 제1호마목, 제2호나목, 제3호다목 및 제4호바목 중 “보존하여야”를 “각각 보존해야”로 하고, 같은 표 제1호마목, 제2호나목, 제3호다목 및 제4호바목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제4호사목 중 “법 제21조제5항”을 “법 제21조제7항”으로, “판매하여야”를 “판매해야”로 한다.

다만, 전산형태로 작성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작성완료후 수정할 수 없는 방식이어야 한다.

별표 8의 제1호가목 기술인력란 중 “법 제43조제2항”을 “법 제43조제4항”으로, “이상(전문대학)”을 “이상(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을 포함하여 이화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이거나 전문대학)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기술인력란 중 “이상(전문대학)”을 “이상(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을 포함하여 미생물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이거나 전문대학)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제2호가목 기술인력란 중 “이상(전문대학)”을 “이상(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을 포함하여 이화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이거나 전문대학)”으로 한다.

별표 9의 제1호사목 “법 제43조제6항제1호”를 “법 제43조제8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다목2) 위반사항란 중 “법 제43조제3항”을 “법 제43조제5항”으로.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하며, 같은 목 근거법령란 중 “법 제43조제6항”을 각각 “법 제43조제8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4) 위반사항란 중 “제2항부터 제5항까지”를 “제2항, 제3항, 제6항 및 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란 5) 중 “제4항”을 “제6항”으로, “제5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목 9)라)(6) 위반사항란 중 “법 제21조제5항”을 “법 제21조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목 11)가)(1) 위반사항란 중 “제4항까지”를 “제3항까지 및 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목 11)나)(1) 위반사항란 중 “법 제21조제5항”을 “법 제21조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목 14) 중 “법 제21조제6항”을 “법 제21조제10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0의 제10호 및 제11호 근거조문란 중 “법 제21조제4항”을 각각 “법 제21조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12호 및 제13호 근거조문란 중 “법

제21조제5항”을 각각 “법 제21조제7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처리기간
개발허가: 70일
변경허가: 70일(취수계획량 변경), 5일(기타)
변경신고: 7일

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서식의 직인란 중 “「먹는물관리법」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”를 “「먹는물관리법」 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6항”으로 한다.

처리기간
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: 10일
수처리제 제조업 등록: 7일
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: 7일
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: 7일

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서식의 직인란 중 “「먹는물관리법」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”를 “「먹는물관리법」 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6항”으로 한다.

처리기간
변경허가 : 10일
변경등록: 7일
변경신고: 7일
영업지위 승계로 인한 변경신고: 7일

별지 제10호서식의 직인란 중 “「먹는물관리법」 제21조제5항”을 “「먹는물관리법」 제21조제7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직인란 중 “「먹는물관리법」 제21조제5항”을 “「먹는물관리법」 제21조제7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직인란 중 “제21조제5항”을 “제21조제7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직인란 중 “「먹는물관리법」 제21조제4항”을 “「먹는물관리법」 제21조제6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4호서식의 직인란 중 “「먹는물관리법」 제21조제5항”을 “「먹는물관리법」 제21조제7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5호서식의 직인란 중 “「먹는물관리법」 제21조제7항”을 “「먹는물관리법」 제21조제1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의 직인란 중 “「먹는물관리법」 제8조”를 “「먹는물관리법」 제7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항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항(서식에 관한 적용례)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변경등록 또는 신고하는
분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4호서식]

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

[]샘물 []염지하수 개발 []임시 허가 신청서

[]임시 허가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임시 허가: 20일 변경신고: 7일
신청인	성명(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)	생년월일	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)	전화번호	
개발내용	위치	면적(㎡)	
	개발공수(개)	개발기간	
개발설비 명세	호정별	깊이(m)	
	관재질 및 직경(mm)	취수계획량(㎡/일)	
양수설비 명세	호정별	동력(마력)	
	토출관직경(mm)	양수능력(㎡/일)	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

「먹는물관리법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 허가(임시 허가 변경신고)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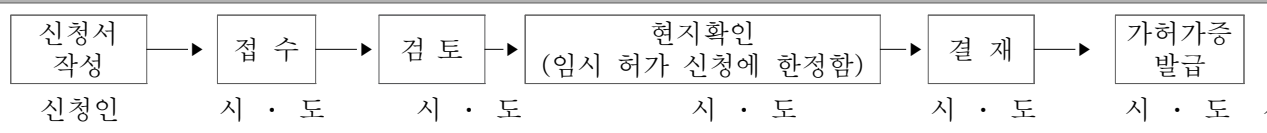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 · 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임시 허가 신청의 경우 가. 사업계획서(샘물·염지하수 개발위치·면적 등) 1부 나.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다. 원상복구 계획서 1부 라.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임시 허가 변경신고의 경우 가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별지 제5호서식]

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

(앞 쪽)

제 호

[]샘물 []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

1. 법인 또는 기관명:

2. 대표자 성명: (생년월일:)

3. 주소: (전화번호:)

4. 개발 내용

위치			
면적(m ²)		개발기간	

5. 임시 허가 내용 및 조건:

「먹는물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시 · 도지사 직인

210mm×297mm[보존용지(1종) 120g/m²]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의2(냉·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·관리) ① 냉·온수기 설치·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·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·온수기, 정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<u>제출하여야</u> 한다.	제2조의2(냉·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·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제출해야</u>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<u>발급하여야</u>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발급해야</u> -----.
④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냉·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.	④ <u>법 제8조의2제6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4조(<u>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</u>)	제4조(<u>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</u>)
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<u>가허가</u> 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	<u>가</u>) ① ----- ----- <u>임시 허가</u> -----

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플 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플 등의 개발 가허가 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가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,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플·염지하수 개발 가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제4조의2(샘플 등의 개발의 가허가 변경신고)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

---. -----

----- 한정하여 -----

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임시 허가를 -----

임시 허가 신청서-----
----- 제출해
야 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임시 허가 신청-----

-----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야
---.

제4조의2(샘플 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) -----

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
야 한다.

제10조(영업의 허가 등) ① 법 제2
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
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
(이하 “먹는샘물등”이라 한다)
의 제조업의 허가, 수처리제 제
조업의 등록, 먹는샘물등의 수
입판매업의 등록, 먹는샘물등의
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정수기의
제조업·수입판매업의 신고를
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
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, 별
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(전자문
서를 포함한다) 또는 별지 제10
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·수
입판매업 신고서(전자문서를 포
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
따른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
다)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
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⑤ 법 제21조제4항 후단에서
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
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

----- 제출해야
-----.

제10조(영업의 허가 등) ① -----
----- 제3항까지, 제6항
및 제7항-----

제출해야 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법 제21조제6항 -----

다.

1. ~ 3. (생략)

⑥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⑦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·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·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⑧ (생략)

⑨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6조제13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검사기관

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⑥ 법 제21조제7항 -----

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 제3항까지,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-----

제출해야 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⑧ (현행과 같음)

⑨ 법 제21조제7항-----

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⑩ (생략)

제11조(휴업 등의 신고) 먹는물관
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7항에
따라 휴업, 재개업 또는 폐업을
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
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변
경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
5호서식의 신고서(전자문서를
포함한다)에 허가증·등록증 또
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
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
다.

제16조(수입신고 등) ① 먹는샘물
등,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
입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
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
입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
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
를 포함한다)를 1부씩 첨부하여
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
다.

1. ~ 5. (생략)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
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
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

-- 제출해야 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⑩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휴업 등의 신고) -----
----- 법 제21조제11항 ---

----- 제출해야 -----
--.

제16조(수입신고 등) ① -----

----- 제출해야 -----
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다. 다만,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후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32조(거짓 또는 과대 표시·광고의 금지 등) 법 제40조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·광고의 범위는 용기·포장·라디오·텔레비전·신문·잡지·음악·영상·인쇄물·간판,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등·수처리제·정수기 및 그 용기·포장의 명칭·제조방법·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경우

가.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허가받은

---. -----

않은 -----
----- 법 제26조제5항-----
-----.

③ -----

----- 발급해야 -----.

제32조(거짓 또는 과대 표시·광고의 금지 등) -----

-----.

1. -----
--

가. -----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규정--

사항 또는 등록된 사항 또는
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
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
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
표시·광고

나. ~ 바. (생략)

2. 정수기의 경우

가.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
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
의 표시·광고

나. ~ 라. (생략)

마.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
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
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
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
· 광고

바.·사. (생략)

제35조(검사기관의 지정 등) ①
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먹는물
수질검사기관·수처리제 검사
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
(이하 “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”
이라 한다)의 지정을 받으려는
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
및 시설·장비 기준은 별표 8과
같다.

②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

나. ~ 바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법 제21조제7항-----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-----
----- 않거 -----

바.·사.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검사기관의 지정 등) ①
법 제43조제9항-----

--- 갖춰야 -----

---.

② -----

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(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위임된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한정한다. 이하 제5항 및 제10항에서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,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~ ⑨ (생략)

⑩ 감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
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

제출해야

[illegible]

제36조(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·임기 등) ① 법 제43조 제10항

-----.

----- 법 제43조 제7항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③ ~ ⑬ (생략)

제36조의2(검사기관 준수사항) 법 제43조제10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”은 별표 8의2와 같다.

제36조의3(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) ①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39조(행정처분기준) 법 제17조제2항, 법 제43조제9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,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
제45조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

② -----

----- 해야 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⑬ (현행과 같음)

제36조의2(검사기관 준수사항) 법 제43조제12항-----

-----.

제36조의3(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) ① -----

----- 법 제43조제13항-----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행정처분기준) -----
--- 법 제43조제11항 -----

-----.

제45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

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제4조제2항에 따른 샘플등의 개발의 가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:

2014년 7월 22일

2의2. ~ 15. (생략)

----- 해야 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임시 허 -----

2의2. ~ 15. (현행과 같음)